## 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-48호

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「대부업 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」일부 개정안을 공고합니다.

2018년 2월 9일금융위원회

## 1. 개정이유

「취약·연체차주 지원방안('18.1.18)」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변경과 대부이자율 없는 경우 대용지표 적용사항 반영

## 2. 주요 내용

- 가.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
  - 여신금융기관의 연체가산이자율의 상한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(3%)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
- 나.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대부이자율 대용지표 제시 연체 발생 시점에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부이자율 대용지표(금융회사의 조달원가 및 개인 신용도 고려한 금리 및「상법」상 상사법정이율 또는 한국은행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 금리) 제시

## 3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<u>2018년 3월</u> <u>20일까지</u>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: 금융정책과, 전화: 02-2100-2835, 팩스: 02-2100-2849, 이메일: dkyoon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보내실 곳 :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(주소 :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)
- ※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www.fsc.go.kr/법령정보/입법 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